

## IMO MSC 110 차 심의 속보

2025년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IMO에서 개최된 제 110차 해사안전위원회 (MSC 110차) 의 심의 개요를 알려 드립니다.

### 1. 채택된 조약 및 관련 코드의 주요 개정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의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SOLAS 조약 II-2 장 및 V 장의 개정

방열에 관한 SOLAS 조약 II-2 장 11 의 문구 수정 및 Pilot Transfer 설비, 보수 점검 등에 관한 V 장 23 의 개정, 또한 동 개정 V 장에 따라 강제화 되는 Pilot 승하선 설비의 성능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에 대해서는 조기 적용을 재촉하는 Circular 의 발행이 아울러 합의되었습니다.

【적용】 2028 년 1 월 1 일 발효

#### (2) HSC 코드의 개정

고속 여객선에서의 유아용 및 체중 140kg까지의 성인용 구명동이의 수량에 관한 1994 HSC 코드 및 2000 HSC 코드의 개정.

【적용】 2028 년 1 월 1 일 발효

### 2. 승인된 조약 및 관련 코드의 주요 개정

이번 회의에서 승인된 주요 의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요건들은 2026 년 5 월에 개최되는 MSC 111 차에서 채택될 전망입니다.

#### (1) IP 코드의 개정

복원성 계산에 이용하는 산업인력(IP, Industrial Personnel)의 체중을 75kg 에서 90kg 으로 변경하는 IP 코드 제 IV 부의 개정.

#### (2) 2011 ESP 코드의 개정

원격 검사 기술(RIT)에 관한 요건을 추가하는 2011 ESP 코드의 개정. 선체구조의 정밀검사를 위한 RIT 사업자의 인증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규정됩니다. 또한, RIT 의 표준화 및 안전한 사용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의 발효까지 RIT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발행될 예정.

#### (3) 1988 LL 의정서의 개정

갑판상의 가드레일 대신에 이용되는 체인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당겨서 팽팽하게 강화한다는 취지의 LL 의정서 25 의 개정.

#### (4) LSA 코드의 개정

Free-fall lifeboat 를 진수하지 않고 Release system 를 시험할 수 있는 장치 (모의 진수 장치)에 관한

LSA 코드의 개정

(5) SOLAS 조약 V 장 및 HSC 코드의 개정

VHF 데이터 교환 시스템(VHF Data Exchange System(VDES): 선박 자동 식별 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의 기능과 더불어 VHF 에서의 양방향 통신 기능 등을 가진 시스템)을 AIS 의 대체품으로 탑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SOLAS 조약 V 장 및 HSC 코드의 개정. 또한 VDES 의 성능 기준이 MSC 111 차에서 승인될 전망

**3. 통일 해석 (Unified Interpretation) 등의 승인**

이번 회의에서 승인된 통일 해석,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통일 해석

(1) SOLAS 조약 II-1 장 12.6.2 의 통일 해석

조약에 적합한 원격 제어 밸브(remotely controlled valve)에 대하여 정하는 SOLAS 조약 II-1 장 12.6.2 의 해석

(2) LSA 코드 6.1.1.3 및 6.1.2.2 의 통일 해석

화물선의 전용구조정의 격납 위치에서 승선(embarkation) 위치로의 이동에서, 외부로부터의 수동으로 매달아 올림을 인정하는 내용의 LSA 코드 6.1.1.3 및 6.1.2.2 의 해석

(3) SOLAS 조약 II-2 장 및 HSC 코드의 통일 해석

소화약제(fire-extinguishing media)에 포함된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PFOS)의 허용치 및 그 확인 절차에 관한 SOLAS 조약 II-2 장 10.11.2.2 및 HSC 코드 7.9.4 의 해석

(4) FSS 코드의 통일 해석

Combined smoke and heat detectors 의 배치에 관한 FSS 코드 9 장 2.4.2.2 의 해석

(5) SOLAS 조약 II-1 장 3-13.2.4 의 통일 해석

증명서가 없는 기존 설치 된 lifting appliance 에 대한 factual statement (statement of fact) 에 관한 SOLAS 조약 II-1 장 3-13.2.4 의 해석

3.2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

(1) Tanker 이외의 선박에 대한 Emergency towing arrangement 에 관한 가이드라인

강도, 안전율, Prototype 시험 등에 관한 Tanker 이외의 선박에 대한 Emergency towing arrangement 에 관한 잠정 가이드라인

(2) Embarkation 과 Disembarkation 설비의 제도, 탑재, 보수 및 검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

Safety net 을 대체할 수 있는 Side net 에 관한 요건의 추가 및 5 년마다 실시되는 선상에서의 시험방법의 개정 등을 포함한 상·하역 설비의 제도, 탑재, 보수 및 검사에 관한 가이드라인 (MSC.1/Circ.1331)의 개정

(3) Lifeboat 및 Rescue boat, Launching appliances 및 release gear 등의 보수·상세 검사·작동 시험, 점검 및 수리에 대한 요건 개정 및 Life-saving appliance 의 시험에 관한 Recommendation 의 개정

2.(4)에 관련하여 Free-fall lifeboat 를 진수 시키지 않고, 이탈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검사 및 시험에 대해 정하는 구명정 등의 보수·상세검사·작동시험 등에 관한 요건(결의 MSC.402(96)과 구명설비의 시험에 관한 권고(결의 MSC.81(70)의 개정

#### 4. 자동운항선 관련 요건 검토

선박의 자동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운항선에 적용해야 할 조약 요건에 대하여 MSC 에서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 및 안전성·운항·보안 등의 각 항목별 기능 요건을 규정할, 자동운항선에 관한 비 강제 코드의 책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 에서는, Correspondence group (이하 CG)의 보고서나 관련 Working Group 에서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 적용, 인증 프로세스, 경보관리, 보수, 항해의 안전, 수색 구난 등의 Chapter 가 최종화 되었습니다. 또한, 비 강제 코드는 2026년 개최 예정인 MSC 111 차에서 최종화되며, 그 후 2030년까지의 채택을 목표로, 강제 코드 책정에 대하여 검토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비 강제 코드의 구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될 예정입니다.

Part1: Introduction(코드의 목적, 적용에 대해서)

Part2: 자동운항선 및 자동운항선 기능에 대한 주요 원칙(인증과 검사, 인증 프로세스, 위험성 평가, 운용상의 배경, 인적 인자 등)

Part 3: 목표, 기능요건 및 기대성능(항해의 안전, Remote Operations 등의 항목 별로 규정)

#### 5. 온실가스 (GHG) 배출 삭감을 위한 신기술 및 대체 연료

MSC 107 차에서, 온실가스(GHG) 배출 삭감을 위한 신기술 및 대체 연료의 리스트화 및 이들의 기술적인 평가 및 이들의 사용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존의 요건에 대한 안전상의 Gap 의 검토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Correspondence Group (이하, CG)로부터 보고 된 신기술 및 대체 연료의 안전상의 Gap 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Recommendation 에 근거하여 각 소위원회에 대하여 조약 또는 코드의 개정이나 가이드라인의 책정 등이 지시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일부를 나타냅니다.

- 선상 CO2 회수 저장에 관한 안전 요건 책정 (화물 운송 소위원회, CCC)
- 리튬 이온 전지 사용에 관한 요건 책정(선박 설비 소위원회, SSE)
- 원자력 상선 코드 개정 (Resolution A.491(XII))(선박 설계·건조 소위원회, SDC)
- 풍력 추진보조의 사용에 관한 잠정 가이드라인 책정 (선박 설계·건조 소위원회, SDC)

또한 원자력에 관한 논의는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성에 한정되며, 국제 원자력 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와의 연계, 법적 자리매김, 핵 확산 방지 조약(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 NPT) 등 다른 조약과의 관련, 환경 영향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 이후에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 6. Cyber risk management

선상에 있어서 Cyber security 의 중요성 및 Security risk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 강제의 해사 분야 Cyber risk management 에 관한 Resolution MSC428(98)과 본 Resolution 이행을 위하여 참조해야 할 가이드라인(MSC-FAL.1/Circ.3/Rev.3)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전 회의에 있어서, 해사 Cyber security 를 높이기 위한 다음 단계로서, 선박 및 항만 시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Cyber Security 기준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이 합의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Working Group 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준을, Risk management 를 포함한 목표베이스의 요건을 정하는 비 강제 코드로 하는 것이 합의되었습니다. 책정 작업의 개시에는 다음 회 이후의 MSC 에서 신규 작업 계획의 제안 및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드에 대한 예비 작업을 비공식 전문가 그룹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일본해사협회 부산 사무소는 국제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께 신속히 전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은 부산 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일반재단 일본해사협회(ClassNK)

부산사무소 도면승인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19 CJ 대한통운빌딩 2층

Tel.: 051-462-8221~3

Fax: 051-462-6022

E-mail: [ps\\_plan@classnk.or.jp](mailto:ps_plan@classnk.or.jp)

---

1. Disclaimer

ClassNK does not provide any warranty or assurance in respect of this document.

ClassNK assumes no responsibility and shall not be liable for any person for any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reliance on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2. Copyright

Unless otherwise stated, the copyright and all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contents in this document are vested in and shall remain vested in ClassNK.